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19
----------	------

제출년월일 : 2010. 3.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 1. 개정사유

- 가. 기 위임된 사무와의 연계성 확보와 현지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확대 위임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 나. 관계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명과 근거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적법성을 도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신설되는 위임사무 : 11건】

#### ◆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8건)

- 2010년 상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인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가 장애인복지과 등 부서별로 각각 신설됨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를 소관 부서별로 각각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함.

#### ◆ 보건정책과, 대기보전과 (2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안에서의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등에 관한 사무”와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로 추가·개정됨에 따라 해당 사무를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함.

#### ◆ 도로과 (1건)

- 도로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허가” 사무를 “차량의 통행제한(과적차량 단속)”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장에게 추가 위임하여 “차량의 운행제한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무를 일괄 처리하도록 개정함.

## 【변경되는 위임사무 : 38건】

### ◆ 교육지원담당관실 (1건)

- 조직개편에 따라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개정함.

### ◆ 회계계약심사과 (3건)

- 시유일반재산 매각가액 범위를 상향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권에 대하여는 매각가액 범위 없이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각각 위임함.

### ◆ 보건정책과, 노인정책과, 기업지원과, 에너지정책과, 교통기획과, 대중교통과, 도로과, 환경정책과, 항만공항정책과 (34건)

- 법령개정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한 근거법규 및 위임사무명을 정비함.

## 【삭제되는 위임사무 : 21건】

### ◆ 위생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에너지정책과, 체육진흥과, 해양수산과 (16건)

-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전용시설에 관한 권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에 관한 권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가스충전사업에 관한 권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에 관한 권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등”,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른 “방치선박 등의 제거” 사무가 군수·구청장 사무로 이양되어 위임사무에서 각각 삭제함.

### ◆ 보건정책과 (5건)

- 「의료법」개정에 따라 “의료보수의 신고” 사무를 삭제하고, 그 밖에 소관 부서 내 사무조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삭제함.

**【부서별 업무조정에 따른 위임사무 정비 : 3건】**

**◆ 교통관리과(삭제) ⇒ 대중교통과(신설)**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을,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와 “자가용자동차 사용에 관한 권한”을 각각 조정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39쪽~106쪽)

#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회계계약심사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사회복지봉사과란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노인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의 제2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나. 무연분묘의 처리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11조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별표 1 중 여성정책과란에 제6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	----------------	--

별표 1 중 아동청소년과란의 제4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란(아동청소년과란)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	----------------	--

별표 1 중 노인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보건정책과란 및 위생정책과란을 각각 보건정책과란, 위생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및 노인정책과란으로 한다.

별표 1 중 위생정책과란을 삭제하고, 기업지원과란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p> <p>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p> <p>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p>	<p>「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p> <p>같은 법 제21조</p> <p>같은 법 제28조</p>	
---	--	--	--

별표 1 중 에너지정책과란의 제3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에너지정책과란)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p> <p>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p> <p>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p> <p>같은 법 제66조제1항</p> <p>같은 법 제78조</p>	
---	---	--	--

별표 1 중 교통기획과란 및 대중교통과란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교통관리과란의 제16호란을 삭제하며, 도로과란의 제1호 과목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체육진흥과란을 삭제하며, 환경정책과란의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p>「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p> <p>나. 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p>	<p>「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p>	
---	---	---	--

별표 1 중 항만공항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해양수산과란의 제5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회계계약심사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사회복지봉사과란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노인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의 제2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노인정책과란)에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화장 및 개장신고 나. 무연분묘의 처리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11조	
3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별표 2 중 아동청소년과란 앞에 여성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고, 아동청소년과란의 제2호란을 삭제하며, 같은 란(아동청소년과란)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	----------------	--

별표 2 중 노인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보건정책과란 및 위생정책과란을 각각 보건정책과란, 위생정책과란, 여성정책과란, 아동청소년과란 및 노인정책과란으로 한다.

별표 2 중 위생정책과란을 삭제하고, 기업지원과란의 제2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승강기의 운행정지명령 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제2항 같은 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	--	---	--

별표 2 중 에너지정책과란의 제3호란 및 제5호란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에너지정책과란)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p> <p>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p> <p>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p>	<p>「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p> <p>같은 법 제66조제1항</p> <p>같은 법 제78조</p>	
---	--	--	--

별표 2 중 대중교통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교통관리과란의 제1호란 및 제8호란을 각각 삭제하며, 도로과란의 제1호 과목 및 제4호 사목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체육진흥과란을 삭제하며, 환경정책과란의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p>「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p> <p>나. 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p>	<p>「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p>	
---	--	---	--

별표 2 중 항만공항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해양수산과란의 제5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4의 성과별란 중 “기획담당관실”을 “교육지원담당관실”로 하고, 도로과란의 제1호 다목 및 제2호 다목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을 각각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며, 같은 란(도로과란)의 제1호란의 차목을 삭제하고, 같은 란(도로과란)에 제7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도로폭원에 관계없음)	「도로법」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종합건설 본 부 장	
---	--	---	---------------	--

별표 5 중 회계계약심사과란의 제2호 사목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일반재산의 매각		
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		

별표 5 중 보건정책과란을 별지와 같이 하고, 기업지원과란의 제5호 다목의 “인·허가등의 재제”를 “인가·허가등의 의제”로 하며, 에너지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삭제하고, 같은 란(에너지정책과란)의 제5호란 및 제8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종자의 선임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 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8	공공용 토지의 사용허가	「전기사업법」 제92조	

별표 5 중 도로과란 제1호란의 타목의 근거법규란의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을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로 하고, 체육진흥과란의 제10호란을 삭제하며, 환경정책과란의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환경정책과란)의 제17호란의 가목의 근거법규 “「대기환경보전법」 제73조제4항”을 “「야생동·식물보호법」 제73조제4항”으로 한다.

1	<p>평가서초안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평가서 초안의 접수</p> <p>나. 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기간 등에 대한 공고 및 초안공람 초안요약서의 정보통신망 게시</p> <p>다. 의견 접수 및 제출, 사업자통지</p> <p>라. 초안공고시 설명회개최사항 포함 요청 수리</p> <p>마.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p> <p>바. 공청회 개최결과 접수</p> <p>사. 공청회 개최여부 협의</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령 제14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6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7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8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8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18조</p>	
---	---	--	--

별표 5 중 대기보전과란에 제9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p>「소음·진동규제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등</p> <p>나.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등, 허가의 취소 등, 폐쇄조치 등, 이행보고 및 확인</p> <p>다. 보고와 검사 등</p> <p>라. 청문</p> <p>마. 과태료</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p> <p>「소음·진동규제법」 제8조</p> <p>같은 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p> <p>같은 법 제47조</p> <p>같은 법 제51조</p> <p>같은 법 제60조</p>	
---	--	---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회계계약 심사과	1	<p>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p> <p>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p> <p>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p> <p>같은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부터 제43조까지</p> <p>같은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81조, 제83조</p> <p>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p>	
장애인 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교 통 기획과	1	<p>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부과 및 징수</p> <p>나. 가산금 부과 및 징수</p> <p>다. 각종대장 기록관리</p>	<p>「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p> <p>같은법 제40조</p> <p>같은법 시행령 제28조</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대 중 교통과	1	<p>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 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p> <p>나.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p> <p>다. 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p> <p>라. 시설사용료의 인가</p> <p>마.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p> <p>바. 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및 신고</p> <p>사.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p> <p>아. 터미널 사용명령</p> <p>자.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p> <p>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p> <p>카. 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 신고</p> <p>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p> <p>파. 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79조</p> <p>같은 법 제88조, 제92조, 제94조</p>	
	2	<p>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p> <p>나.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p> <p>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p> <p>같은 법 제83조</p> <p>같은 법 제94조</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항만공항 정 책 과	1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의 신청· 접수, 지급 등에 관한 권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별표 2]

##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회계계약 심사과	1	<p>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p> <p>1) 가액 1억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인 재산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p> <p>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주택재개발사업·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내 재산의 처분</p> <p>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p>	<p>「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p> <p>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p> <p>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p> <p>부터 제43조까지</p> <p>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p> <p>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p> <p>까지, 제81조, 제83조</p> <p>같은 법 시행령 제26조,</p> <p>제29조부터 제36조까지,</p> <p>제81조</p>	
장애인 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여성 정책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대 중 교통과	1	<p>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공사시행의 인가, 변경인가, 인가기간 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p> <p>나. 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p> <p>다. 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 신고</p> <p>라. 시설사용료의 인가</p> <p>마. 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p> <p>바. 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인가 및 신고</p> <p>사.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p> <p>아. 터미널 사용명령</p> <p>자.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p> <p>차. 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p> <p>카. 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 신고</p> <p>타. 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p> <p>파. 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p> <p>같은 법 제39조</p> <p>같은 법 제40조</p> <p>같은 법 제41조</p> <p>같은 법 제42조</p> <p>같은 법 제43조</p> <p>같은 법 제44조</p> <p>같은 법 제45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48조</p> <p>같은 법 제79조</p> <p>같은 법 제88조, 제92조, 제94조</p>	
	2	<p>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p> <p>나. 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p> <p>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p> <p>같은 법 제83조</p> <p>같은 법 제94조</p>	
	3	<p>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보고 검사</p>	<p>「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항만공항 정 책 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 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 법 제56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별표 5]

##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건 정책과	1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기관 개설허가 나. 개설허가사항 변경허가 다. 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라. 지도와 명령 마. 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바. 의료지도원 임명 사.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의료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 법 제 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 법 제59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69조 같은 법 제84조	
	2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 나.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다.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라. 의료법인 설립등기 등의 보고 마. 재산처분 또는 정관변경의 허가 바. 임원 선임의 보고 등 사. 재산의 증가보고 아.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자.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차. 해산신고	「의료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제49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	

실과별	번호	위 입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정 책 과	3	<p>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특수의료장비등록 사무</p> <p>나.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변경사무</p> <p>다. 특수의료장비공동 활용사무</p> <p>라. 특수의료장비인력 등록사항 변경 사무</p> <p>마.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 사용중지 등의 사무</p>	<p>「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p> <p>같은 규칙 제4조</p> <p>같은 규칙 제2조</p> <p>같은 규칙 제4조</p> <p>같은 규칙 제4조제3항</p>	
	4	<p>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한약업사의 허가</p> <p>나.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p> <p>다.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p> <p>라. 허가증의 갱신</p> <p>마.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p> <p>바. 폐업 등의 신고</p> <p>사. 의약품 판매 점포 이외의 장소 승인</p>	<p>「약사법」 제45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88조</p> <p>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약사법」 제50조</p>	
	5	<p>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개설 등록</p> <p>나. 폐업 등의 신고</p> <p>다. 의약품 조제 승인</p> <p>라. 약국제제의 제조신고</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p> <p>「약사법」 제20조</p> <p>같은 법 제22조</p> <p>같은 법 제23조</p> <p>같은 법 제41조</p>	
	6	<p>의약품판매업 및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보고와 검사</p> <p>나. 업무개시명령 등</p> <p>다. 폐기명령 등</p> <p>라. 회수 등 사실공표</p> <p>마. 검사명령</p>	<p>「약사법」 제69조</p> <p>같은 법 제70조</p> <p>같은 법 제71조</p> <p>같은 법 제72조</p> <p>같은 법 제73조</p>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정책과		바. 개수명령 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아. 청문 자. 약사감시원 임명 등 차. 과징금 처분 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74조 같은 법 제76조 같은 법 제77조 같은 법 제78조 같은 법 제81조 같은 법 제98조	
	7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다.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마.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바. 응급의료 대불비용 보조 사. 대불금 등에 대한 자료제공 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카. 당직의료기관 지정 타.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파. 구급차 말소·등록 하. 구급차 지도감독 거. 이송업 허가, 변경허가 너. 이송업 휴업 등 신고 더. 이송업 영업 승계신고 러. 영업정지 등 머. 청문 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같은 법 제14조 같은 법 제15조 같은 법 제16조 같은 법 제18조 같은 법 제22조 같은 법 제22조의2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4조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5조제2항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2조	
	8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같은 법 제6조제2항	

실과별	번호	위 임 사 무 명	근 거 법 규	비고
보 건 정 책 과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 재개업 신고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 무능력 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사.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 관리자 제외)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 차. 마약의 도매보고 카. 마약의 소매보고 타. 마약류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 파. 허가 등의 제한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거. 출입·검사와 수거 너. 폐기 명령 등 더. 업무보고 등 러.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머. 청문 버. 과징금처분 서. 과태료	같은 법 제7조 같은 법 제8조제2항 같은 법 제8조제3항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제12조 같은 법 제13조 같은 법 제26조 같은 법 제27조 같은 법 제29조 같은 법 제33조제2항 같은 법 제37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6조 같은 법 제69조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회 계 계 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가액 5천만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동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동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동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부터 제47조 까지, 제81조, 제83조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 까지, 제81조		회 계 계 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1) 가액 1억원 및 토지 면적 300㎡미만인 재산 의 최종처분결정권을 제외한 처분관련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 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도 시 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 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 부터 제47조까지, 제81조,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제81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임범위 상향,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주거환경정 비구역내 금액구분 없이 재산처분권 위임  지구수정
<u>&lt;신 설&gt;</u>					장애인 복지과	1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노 인 정책과	1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및 개장 신고 나. 무연고 시체의 처리 다. 무연분묘의 처리 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마.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바. 사설묘지· 사설 화장장 · 사설납골시설 설 치자 및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과 징금 처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24조 동법 제38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30조		----	1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및 개장 신고 나. 무연분묘의 처리 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법 제28조 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제11조		관련법 개정 (군· 구 사무), 지구수정  관련법 개정 (군· 구 사무)
	2	사설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사설묘지의 설치 신고 및 허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u>&lt;삭 제&gt;</u>					관련법 개정 (군· 구 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u>나.사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신고</u> <u>다.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폐지 등</u> <u>라.이전 및 허가 취소 등의 조치</u> <u>마.검사와 보고</u> <u>바.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 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료 신고</u>	<u>동법 제14조</u> <u>동법 제22조</u> <u>동법 제26조</u> <u>동법 제32조</u> <u>동법 제21조</u>							
		<u>&lt;신 설&gt;</u>				3	<u>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u>	<u>「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u>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u>&lt;신 설&gt;</u>			여성 정책과	6	<u>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u>	<u>「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u>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아동 청소년과	4	<u>아동전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u> <u>가. 입장료·이용료의 징수 승인</u> <u>나. 입장료와 이용료 등의 감면 권한</u>	<u>「아동복지법」 제17조</u> <u>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1항</u> <u>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u>	---- ----	<u>&lt;삭 제&gt;</u>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u>&lt;신 설&gt;</u>				5	<u>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u>	<u>「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u>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위생 정책과	1	<u>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u>	<u>「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2항</u>		<u>&lt;삭 제&gt;</u>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기업 지원과	2	<u>「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u> <u>가.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u> <u>나.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u> <u>다.관리주체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검사</u> <u>라.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u>	<u>「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u> <u>동법 제18조 제2항</u> <u>동법 제21조 제2항제3호</u> <u>동법 제28조</u>	---- ----	2	<u>「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u> <u>가.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u> <u>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u> <u>다.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u>	<u>「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u> <u>같은 법 제21조</u> <u>같은 법 제28조</u>		관련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에너지 정책과	3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의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보고 및 검사 바.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등록 또는 신고수수료 납부 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차.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동법 제11조 동법 제13조제3항 동법 제14조제1항제3호 동법 제38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9조제3항 동법 제41조제1항		----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 접수 나. 검사대상기기종자의 선입기한 연기승인 다.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라.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59조제4항 동법 제89조제1항 동법 제100조		4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종자의 선입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관련법 개정
	5	「전기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나.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 허가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동법 제89조제2항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교 통 기획과	1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부과 및 정수 나.가산금 부과정수 다.각종대장 기록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교 통 기획과	1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부과 및 정수 나.가산금 부과 및 정수 다.각종 대장 기록관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관련법 개정
대 중 교통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사시행의 인가, 변 경인가, 인가기간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나.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마.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 인가 및 신고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명령 아.터미널 사용명령 자.터미널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정처분 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 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기 타 물건의 검사, 관 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 사무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71조 동법 제79조, 제83조, 제85조		대 중 교통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사시행의 인가, 변 경인가, 인가기간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나.사용개시기간의 지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마.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 인가 및 신고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명령 아.터미널 사용명령 자.터미널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 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 사무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8조, 제92조, 제94조		관련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2	<a href="#">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a> <a href="#">가.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a> <a href="#">나.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a> <a href="#">다.과태료 부과 및 징수</a>	<a href="#">「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a> <a href="#">같은 법 제83조</a> <a href="#">같은 법 제94조</a>		부서간 업무조정
교통관리과	16	<a href="#">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권한</a> <a href="#">가.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a> <a href="#">나.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a> <a href="#">다.과태료 부과 및 징수</a>	<a href="#">「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a> <a href="#">같은 법 제74조</a> <a href="#">같은 법 제85조</a>				<삭 제>			부서간 업무조정
도로과	1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이하인 도로 (도로폭 20m이하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타. (생략) 파.도로공사계획의 공고 하.~도. (생략)	(생략) <a href="#">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a> (생략)				----- ----- ----- ----- ----- 가.~타. (현행과 같음) 파.----- ----- 하.~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a href="#">같은 법 시행령 제29조</a>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체육진흥과	1	<a href="#">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a>	<a href="#">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a> <a href="#">동법시행령 제17조</a>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환경정책과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검사유예 및 검사명령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다.과태료 부과 징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같은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5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법시행규칙 제30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법 정비
항만공항정책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1항, 동법 제39조		항만공항정책과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제56조		관련법 개정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보고 나.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보고 나.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에 관한 권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9조 제2항, 제45조제3항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유가보조금의 신청·접수, 지급 등에 관한 권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해양수산과	5	방치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		<삭제>			관련법 개정 (군·구사무)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회계 계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u>(가액 5천만원 및 토지면적 300㎡ 미만)</u>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u>동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u> <u>동법 시행령 제37 조</u> 부터 제43조까지 <u>동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u> <u>제44조부터 제47조</u> <u>까지, 제81조,</u> <u>제83조</u> <u>동법 시행령 제26조</u> <u>제29조부터 제36조</u> <u>까지, 제81조</u>		회계 계약 심사과	1	시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시유일반재산의 매각 <u>1)가액 1억원 및 토지 면적 300㎡ 미만인 재산 의 최종처분결정권을</u> <u>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 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 시 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u> 나. 시유일반재산의 대부 및 유지관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u>같은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u> 부터 제43조까지  <u>같은 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44조</u> <u>부터 제47조까지,</u> <u>제81조, 제83조</u> <u>같은 법 시행령</u> <u>제26조, 제29조부터</u> <u>제36조까지, 제81조</u>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위임범위 상향,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주거환경정 비구역내 금액구분 없이 재산처분권 위임  차구수정
<u>&lt;신 설&gt;</u>					장애인 복지과	1	<u>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u>	<u>「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u>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노인 정책과	1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및 개장 <u>신고</u> <u>나. 무연고 시체의 처리</u> <u>다. 무연분묘의 처리</u> <u>라.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u> <u>마.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u> <u>바. 시설묘지· 시설 화장장 · 시설 납골시설 설 치자 및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한 과 징금 처분</u>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u>동법 제11조</u> <u>동법 제24조</u> <u>동법 제38조</u>  <u>동법 제10조</u> <u>동법 제30조</u>		----	1	매장· 화장 및 개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매장· 화장 및 개장 <u>신고</u> <u>나. 무연분묘의 처리</u> <u>다.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u> <u>라.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u>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u>같은 법 제28조</u> <u>같은 법 제20조</u>  <u>같은 법 제11조</u>		관련법 개정 (군· 구 사무), 차구수정  관련법 개정 (군· 구 사무)
	2	<u>시설묘지· 화장장· 납골 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시설묘지의 설치 <u>신고 및 허가</u>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u>&lt;삭 제&gt;</u>					관련법 개정 (군· 구 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u>나.사설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설치신고</u> <u>다.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의 폐지 등</u> <u>라.이전 및 허가 취소 등의 조치</u> <u>마.검사와 보고</u> <u>바.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 납골시설의 사용료·관리료 신고</u>	<u>동법 제14조</u> <u>동법 제22조</u> <u>동법 제26조</u> <u>동법 제32조</u> <u>동법 제21조</u>							
		<u>&lt;신 설&gt;</u>				3	<u>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u>	<u>「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u>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u>&lt;신 설&gt;</u>			여성정책과	1	<u>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u>	<u>「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u>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아동 청소년과	2	<u>아동전용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u> <u>가.입장료·이용료의 징수 승인</u> <u>나.입장료와 이용료 등의 감면 권장</u>	<u>「아동복지법」 제17조</u> <u>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u> <u>동법 시행령 제12조제2항</u>				<u>&lt;삭 제&gt;</u>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u>&lt;신 설&gt;</u>				5	<u>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지도감독</u>	<u>「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u>		국(局) 확대개편 소관부서별 사무신설
위생 정책과	1	<u>학교환경 위생정화구역 설정에 따른 협의</u>	<u>「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제2항</u>				<u>&lt;삭 제&gt;</u>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기업 지원과	2	<u>「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음의 권한</u> <u>가.특별관리대상 승강기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u> <u>나.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u> <u>다.관리주체에 대한 소속공무원의 검사</u> <u>라.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u>	<u>「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u> <u>동법 제18조 제2항</u> <u>동법 제21조 제2항제3호</u> <u>동법 제28조</u>			2	<u>「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u> <u>가.승강기의 운행정지 명령</u> <u>나.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보고 및 검사</u> <u>다.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과태료</u>	<u>「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8조 제2항</u> <u>같은 법 제21조</u> <u>같은 법 제28조</u>		관련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에너지 정책과	3	<u>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석유판매업(부산물인 석유제품 판매업은 제외)의 등록 및 신고,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 나. 조건부 등록 및 취소 다.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명령 라.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마. 보고 및 검사 바. 등록취소에 따른 청문 사.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아. 등록 또는 신고수수료 납부 자. 유사석유제품의 제조·판매·운송·사용 등에 대한 중지명령 등 차.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의 신고	<u>「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u>  <u>동법 제11조</u> <u>동법 제13조제3항</u>  <u>동법 제14조제1항 제3호</u> <u>동법 제38조</u> <u>동법 제40조</u> <u>동법 제49조제3항</u> <u>동법 제41조제1항</u>  <u>동법 제30조</u>  <u>동법 제12조제2항</u>		-----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4	<u>「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u> 가.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 접수 나. 검사대상기기종중자의 선입기한 연기승인 다.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 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라.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u>「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u>  <u>동법 제59조제4항</u> <u>동법 제89조제1항</u>  <u>동법 제100조</u>			4	<u>「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검사대상기기종중자의 선입기한 연기승인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 기기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령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u>「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u> <u>같은 법 제66조 제1항</u>  <u>같은 법 제78조</u>			관련법 개정
	5	<u>「전기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u> 가.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나.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의 사용 허가	<u>「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u> <u>동법 제89조 제2항</u>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대 중 교통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사시행의 인가, 변경 인가, 인가기간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나.사용개시기간의 지 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마.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 인가 및 신고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명령 아.터미널 사용명령 자.터미널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기 타 물건의 검사, 관 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 사무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객자동차운수 사업법 제39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41조  동법 제42조 동법 제43조  동법 제45조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50조  동법 제71조  동법 제79조, 제83조, 제85조		대 중 교통과	1	여객자동차터미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공사시행의 인가, 변경 인가, 인가기간연장, 공사완공 시설 확인 나.사용개시기간의 지 정 및 사용개시 신고 다.터미널사업자의 사용약관신고 라.시설사용료의 인가 마.터미널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시 중지 및 시정명령 바.터미널의 위치, 규모, 구조·설비의 변경 인가 및 신고 사.터미널사업의 개선 명령 아.터미널 사용명령 자.터미널사업의 양도· 양수 및 법인의 합병신고 차.터미널사업의 상속신고 카.터미널사업의 휴지 및 폐지 허가 또는신고 타.보고 또는 서류제출 명령,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 파.위임사무 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38조  같은 법 제39조  같은 법 제40조  같은 법 제41조 같은 법 제42조  같은 법 제43조  같은 법 제44조  같은 법 제45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48조  같은 법 제79조  같은 법 제88조, 제92조, 제94조		관련법 개정
		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 나.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 다.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1조 같은 법 제83조  같은 법 제94조				부서간 업무조정			
		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부서간 업무조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교통 관리과	1	<a href="#">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 검사</a>	<a href="#">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1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4조</a>		----		<a href="#">〈삭 제〉</a>			부서관 업무조정
	8	<a href="#">자가용자동차사용에 관한 권한</a> <a href="#">가.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a> <a href="#">나.사용의 제한 및 금지명령</a> <a href="#">다.과태료 부과 및 징수</a>	<a href="#">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a> <a href="#">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4조</a> <a href="#">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a>				<a href="#">〈삭 제〉</a>			부서관 업무조정
도로과	1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20m이하인 도로(도로폭 20m이하인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타. (생략) 파.도로공사계획의 공고 하.~도. (생략)	(생략) <a href="#">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a> (생략)		----	----	가.~타. (현행과 같음) 파.----- ----- 하.~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a href="#">같은법 시행령 제29조</a>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4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바. (생략) 사.도로공사계획의 공고 아.~저. (생략)	(생략) <a href="#">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a> (생략)			--	가.~바. (현행과 같음) 사.----- ----- 아.~저.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a href="#">같은법 시행령 제29조</a>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체육 진흥과	1	<a href="#">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a>	<a href="#">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a> <a href="#">동법시행령 제17조</a>				<a href="#">〈삭 제〉</a>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2] 군수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환경정책과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검사유예 및 검사명령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다.과태료 부과 징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30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같은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	4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배출가스 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나.저공해 자동차 등의 표지 교부 (저공해 자동차에 한함)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 같은법 제28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관련법 정비
항만공항공정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제1항 동법 제39조		항만공항공정	1	자가용화물자동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사용신고 및 변경신고 나.유상운송 및 임대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5조 같은법 제56조		관련법 개정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4조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보고 나. 검사 및 질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			
해양수산과	5	방치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관리법」 제13조		----		<삭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4]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4] 직속기관장 및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수입기관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u>기획담당관실</u>	1	(생략)	(생략)	<del>(생략)</del>	<del>교육지원담당관실</del>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del>(현행과 같음)</del>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도로과	1	도로구역 또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20m를 초과하는 도로(도로폭 20m를 초과하는 도로와 연결되는 교차점 광장 포함)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나. (생략) 다.도로공사계획의 공고 라.~자. (생략) <u>차.차량의 통행 제한(과적차량 단속)</u>	(생략) <u>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u> (생략) <u>같은법 제59조</u>	종합건설분장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라.~자. (현행과 같음) <u>차. &lt;삭 제&gt;</u>	(현행과 같음) <u>같은법 시행령 제29조</u> (현행과 같음) <u>&lt;삭 제&gt;</u>	----- ----- -----	관련법 개정            7호사무로 통합
	2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에 관한 다음의 권한(강화, 옹진 제외) 가.~나. (생략) 다.도로공사계획의 공고 라.~자. (생략)	(생략) <u>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u> (생략)	종합건설분장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라.~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같은법 시행령 제29조</u> (현행과 같음)	----- -----	관련법 개정
			<u>&lt;신 설&gt;</u>			7	<u>차량의 운행제한(단속) 및 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도로폭원에 관계없음)</u>	<u>「도로법」 제59조</u> <u>같은법 시행령 제55조</u> <u>같은법 시행규칙 제34조</u>	<u>종합건설분장</u>	사무의 일괄처리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회계 계약 심사과	2	공유재산중 일반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바. (생략) 사.일반재산의 매각 <u>(가액 5천만원 및 토지면적 300㎡미만)</u>  아.~너.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생략) <u>동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u> <u>동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u> (생략)		----	----	----- ----- ----- 가.~바. (현행과 같음) 사.일반재산의 매각 <u>1)가액 1억원 및 토지 면적 300㎡미만인 재 산의 최종처분결정권 을 제외한 처분관련 사항</u> <u>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조에 따 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도 시 환경정비사업구역 내 재산의 처분</u> 아.~너.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같은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같은법 시행령 제37조 부터 제43조까지</u>          (현행과 같음)		공시지가 상승에따른 위임범위 상향, 업무의 일원화를 위하여 주거환경 정비구역 내 금액구분 없이 재산처분권 위임
보건 정책과	1	의약품 판매업소 등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보고와 검사  나.업무개시명령 등 다.폐기명령 등 라.검사명령 마.개수명령 바.허가취소 및 업무 정지 등 사.청문 아.과징금 처분 자.과태료 부과·징수	「약사법」 제69조 제1항 같은법 제70조 같은법 제71조 같은법 제73조 같은법 제74조 같은법 제76조  같은법 제77조 같은법 제81조 같은법 제98조		보건 정책과	1	의료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부속병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의료기관 개설허가  나.개설허가사항 변경 허가 다.부속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라.지도와 명령 마.무면허 의료행위 등 단속 바.의료지도원 임명 사.행정처분에 따른 청문	「의료법」 제33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 같은법 제3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2조 같은법 제59조 같은법 제27조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제84조		관련법 개정 (경제자 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 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 위임조항 정비
	2	의료보수의 신고	「의료법」 제45조							
	3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의료법」 제48조							
	4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취소	「의료법」 제51조							
	5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 나.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다.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라.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같은법 제14조  같은법 제15조 같은법 제16조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보건 정책과		마.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	같은법 제18조		보건 정책과	2	의료법인 설립에 관한 다음의 권한			관련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 위임조항 정비	
		바.응급의료 대불비용보조	같은법 제22조				가.의료법인의 설립				「의료법」 제48조,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사.대불금 등에 대한 자료제공	같은법 제22조의2				허가 신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아.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같은법 제26조				나.의료법인의 부대사업 신고				같은법 제49조제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자.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같은법 제29조				다.의료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				같은법 제51조
		차.당직의료기관 지정	같은법 제34조				라.의료법인 설립등기 등의 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0조
		카.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같은법 제35조				마.재산처분 또는 경관 변경의 허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51조
		타.응급차 말소·등록	같은법 제45조				바.임원 선임의 보고 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52조
		파.응급차 지도감독	같은법 제50조				사.재산의 증가보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하.영업정지 등	같은법 제55조				아.기본재산의 처분 허가신청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거.청문	같은법 제56조	자.법인사무의 검사·감독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너.과징금 부과징수	같은법 제57조	차.해산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더.과태료 부과징수	같은법 제62조										
리.이송업 허가, 변경허가	같은법 제51조										
머.이송업 휴업 등 신고	같은법 제53조										
버.이송업 영업 승계신고	같은법 제54조										
6		의약품도매상에 관한 사항	-			3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가.특수의료장비등록 사무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나.허가사항등의 변경 허가 신청등	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나.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변경사무				같은 규칙 제4조				
	다.폐업등의 신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									
7		의료기관(종합병원,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부속병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				다.특수의료장비공동 활용사무				
	가.개설허가 및 사항변경	「의료법」 제33조	라.특수의료장비인력 등록사항 변경 사무				같은 규칙 제2조				
8		한약업사에 관한 다음의 권한	-			4	의약품판매업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한약업사의 허가	「약사법」 제45조	가.한약업사의 허가				「약사법」 제45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나.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나.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같은법 시행규칙 제57조				
	다.허가증의 갱신	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	다.의약품 도매상의 허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라.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처분	같은법 시행규칙 제96조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9	<p>마.약류 도·소매업자, 의료업자, 마약류 관리에 대한 다음의 권한</p> <p>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p> <p>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p> <p>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p> <p>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휴업·재개업신고</p> <p>마. 마약류취급자의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외해탈 경우 신고</p> <p>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마약류도매업 제외)</p> <p>사. 사고마약류의 처리</p> <p>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p> <p>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p> <p>차. 마약의 도매보고</p> <p>카. 마약의 소매보고</p> <p>타. 마약류 관리자의 마약류 인계인수</p> <p>파. 허가 등의 제한</p> <p>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p> <p>거. 출입·검사와 수거</p> <p>너. 폐기 명령 등</p> <p>더. 업무보고 등</p> <p>러. 허가의 취소와 업무정지</p> <p>막. 청문</p> <p>버. 과징금처분</p>	<p>「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p> <p>같은법 제6조제2항</p> <p>같은법 제7조제2항</p> <p>같은법 제8조제2항</p> <p>같은법 제8조제3항, 제5항</p> <p>같은법 제10조</p> <p>같은법 제12조</p> <p>같은법 제13조</p> <p>같은법 제26조</p> <p>같은법 제27조</p> <p>같은법 제29조</p> <p>같은법 제33조제2항</p> <p>같은법 제37조</p> <p>같은법 제40조</p> <p>같은법 제41조</p> <p>같은법 제42조</p> <p>같은법 제43조</p> <p>같은법 제44조</p> <p>같은법 제45조</p> <p>같은법 제46조</p>								<p>관련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 위임조항 정비</p>
		<p>라. 허가증의 갱신</p> <p>마. 허가사항 등의 변경</p> <p>허가 신청 등</p> <p>바. 폐업 등의 신고</p> <p>사. 의약품 판매 점포 이외의 장소 승인</p>					<p>같은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p> <p>같은법 시행규칙 제88조</p> <p>같은법 시행규칙 제89조제1항</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및 「약사법」 제50조</p>				
		<p>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개설 등록</p> <p>나. 폐업 등의 신고</p> <p>다. 의약품 조제 승인</p> <p>라. 약국제제의 제조신고</p>					<p>「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약사법」 제20조</p> <p>같은법 제22조</p> <p>같은법 제23조</p> <p>같은법 제41조</p>				
		<p>의약품판매업 및 약국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보고와 검사</p> <p>나. 업무개시명령 등</p> <p>다. 폐기명령 등</p> <p>라. 회수 등 사실공표</p> <p>마. 검사명령</p> <p>바. 개수명령</p> <p>사.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p> <p>아. 청문</p> <p>자. 약사감시원 임명 등</p> <p>차. 과징금 처분</p> <p>카. 과태료 부과 및 징수</p>					<p>「약사법」 제69조</p> <p>같은법 제70조</p> <p>같은법 제71조</p> <p>같은법 제72조</p> <p>같은법 제73조</p> <p>같은법 제74조</p> <p>같은법 제76조</p> <p>같은법 제77조</p> <p>같은법 제78조</p> <p>같은법 제81조</p> <p>같은법 제98조</p>				
		<p>응급의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p> <p>나.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p> <p>다.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p> <p>라.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지원</p> <p>마. 다수의 환자발생에 따른 조치</p> <p>바. 응급의료 대불비용 보조</p> <p>사. 대불금 등에 대한 자료제공</p>					<p>「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p> <p>같은법 제14조</p> <p>같은법 제15조</p> <p>같은법 제16조</p> <p>같은법 제18조</p> <p>같은법 제22조</p> <p>같은법 제22조의2</p>				
	10	<p>특수의료장비에 관한 다음의 권한</p> <p>가. 특수의료장비등록 사무</p> <p>나. 특수의료장비시설 등록사항 변경사무</p> <p>다. 특수의료장비공동 활용사무</p>	<p>「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p> <p>같은 규칙 제4조</p> <p>같은 규칙 제2조</p>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라. 특수의료장비인력 등록사항 변경 사무	같은 규칙 제4조				아.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같은 법 제26조		관련법 개정 (경제자 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 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 위임조항 정비
		마. 특수의료장비의 양도(폐기) 사무	같은 규칙 제4조 제3항			자.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협의	같은 법 제29조			
11		의료지도원 임명 등	「의료법」 제69조			차.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카. 당직의료기관 지정	같은 법 제30조 같은 법 제34조			
12		약사감시원 임명 등	「약사법」 제78조			타.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 파. 구급차 말소·등록	같은 법 제35조 같은 법 제45조제2항			
						하. 구급차 지도감독 거. 이송업 허가, 변경허가	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제51조			
						너. 이송업 휴업 등 신고 더. 이송업 영업 승계신고	같은 법 제53조 같은 법 제54조			
						리. 영업정지 등 머. 청문	같은 법 제55조제2항 같은 법 제56조			
						버. 과징금 부과 및 징수 서. 과태료 부과 및 징수	같은 법 제57조 같은 법 제62조			
					8	마약류취급자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나. 마약류 관리자의 지정 다. 허가증 등의 교부 및 재교부	같은 법 제6조제2항 같은 법 제7조			
						라. 마약류취급자의 폐업 · 휴업 · 재개업 신고	같은 법 제8조제2항			
						마. 마약류취급자가 사망, 무능력자가 된 때 및 법인이 해산한 경우 신고	같은 법 제8조제3항			
						바. 구입서 및 판매서 교부	같은 법 제10조			
						사.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같은 법 제12조			
						아.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마약류 관리자 제외)	같은 법 제13조			
						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 등의 판매 승인	같은 법 제26조			
						차. 마약의 도매보고	같은 법 제27조			
						카. 마약의 소매보고	같은 법 제29조			
						타. 마약류 관리자의 마 약류 인계인수	같은 법 제33조제2항			
						파. 허가 등의 제한	같은 법 제37조			
						하.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	같은 법 제40조			
						거. 출입·검사와 수거	같은 법 제41조			
						너. 폐기 명령 등	같은 법 제42조			
						더. 업무보고 등	같은 법 제43조			
						리.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같은 법 제44조			
						머. 청문	같은 법 제45조			
						버. 과징금 처분	같은 법 제46조			
						서. 과태료	같은 법 제69조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기업지원과	5	공장설립등의 승인, 등록에 관한 사무 가.~나. (생략) 다. <u>인·허가등의</u> <u>재제</u> 라.~더. (생략)	(생략) (생략) (생략)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u>인가·허가 등의</u> <u>의제</u> 라.~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
에너지정책과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 가스용품제조에 관한 허가·허가 및 변경허가 나. 지위승계 등의 신고수리 다. 허가취소 등의 처분 라. 과징금의 부과·징수 마. 허가취소에 따른 청문 바. 안전관리자의 채용·해임 신고 수리 사. 안전관리규정 검토 및 변경명령 아.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자. 허가관청 등의 조치 차. 가스용품의 품질보장 등 카. 보고와 조사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동법 제8조 동법 제9조 동법 제10조 동법 제40조 동법 제16조 동법 제12조 동법 제52조 동법 제29조 동법 제21조 동법 제38조		----- -----		<삭 제>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의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관리대상자의 에너지 사용량 신고접수 나. 검사대상기기종자의 선입기간 연기승인 다.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명 및 검사 라.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제1항 동법 제59조제4항 동법 제89조제1항 동법 제100조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검사대상기기종자의 선입기간 연기승인 나. 에너지관리대상자 및 검사대상기기 설치자에 대한 보고의 명명 및 검사 다. 위임사무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0조제4항 같은 법 제66조제1항 같은 법 제78조		관련법 개정
	8	「전기사업법」에 의한 토지사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공공용 토지의 사용 허가 나. 타인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다. 타인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전기사업법」 제92조 동법 제88조제2항 동법 제89조제2항		8		공공용 토지의 사용 허가	「전기사업법」 제92조		관련법 개정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별표 5]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실과별	번호	위임사무명	근거법규	비고	
도로과	1	도로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카. (생략) 타. 도로공사계획의 공고 파.~도. (생략)	(생략) <u>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3</u> (생략)		----- ----- 가.~카. (현행과 같음) 타.----- ----- 파.~도. (현행과 같음)		----- ----- 가.~카. (현행과 같음) 타.----- ----- 파.~도.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u>같은법 시행령 제29조</u> (현행과 같음)		관련법 개정
체육진흥과	10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폐지, 변경, 보고 및 지도감독	<u>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u> <u>같은법 시행령 제17조</u>		<u>&lt;삭 제&gt;</u>					관련법 개정 (군·구 사무)
환경정책과	1	평가서초안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평가서 초안의 접수 나. 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기간 등에 대한 공고 및 초안 공람 초안요약서의 정보통신망 게시 다. 의견 접수 및 제출 사. 사업자통지 라. 초안공고시 설명회 개최사항 포함 요청 수리 마.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바. 공청회 개최결과 접수 사. 공청회 개최여부 협의	<u>환경교통재정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조제1항</u> <u>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제5항</u> <u>같은법 시행령 제7조</u> <u>같은법 시행령 제8조</u> <u>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2항</u> <u>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5항</u> <u>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6항</u>	----- -----	1	평가서초안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평가서 초안의 접수 나. 사업개요 공람장소, 공람기간 등에 대한 공고 및 초안공람 초안요약서의 정보통신망 게시 다. 의견 접수 및 제출 사. 사업자통지 라. 초안공고시 설명회 개최사항 포함 요청 수리 마.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대한 협의 바. 공청회 개최결과 접수 사. 공청회 개최여부 협의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u> 및 <u>환경영향평가법 제4조</u> <u>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항</u> <u>같은법 시행령 제14조</u> <u>같은법 시행령 제16조</u> <u>같은법 시행령 제17조</u> <u>같은법 시행령 제18조</u> <u>같은법 시행령 제18조</u> <u>같은법 시행령 제18조</u>		관련법 개정	
	17	위임된 권한에 대한 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부과·징수 나.~바. (생략)	<u>「대기환경보전법」 제73조제4항</u> (생략)		----- ----- 가.----- ----- 나.~바. (현행과 같음)		----- ----- 가.----- ----- 나.~바. (현행과 같음)	<u>「야생동물보호법」 제73조제4항</u>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대기보전과			<u>&lt;신 설&gt;</u>	----- -----	9	<u>「소음·진동규제법」에 관한 다음의 권한</u> 가.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나. 개선명령, 조업정지 명령 등, 허가의 취소 등, 폐쇄조치 등, 이행보고 및 확인 다. 보고와 검사 등 라. 청문 마. 과태료	<u>「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u> <u>「소음·진동규제법」 제8조</u> <u>같은법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20조</u> <u>같은법 제47조</u> <u>같은법 제51조</u> <u>같은법 제60조</u>		관련법 개정 (경제자유구역의 사무처리 특례 -군수·구청장 사무 중 시장 직접수행 사무)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li> <li>○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li> <li>○ 제37조(매각대금의 납부)</li> <li>○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장사 등에 관한 법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li> <li>○ 제11조(묘지의 일제 조사)</li> <li>○ 제12조(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li> <li>○ 제14조(사설묘지의 설치 등)</li> <li>○ 제15조(사설 화장시설 등의 설치)</li> <li>○ 제20조(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li> <li>○ 제24조(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li> <li>○ 제26조(장사시설의 폐지 등)</li> <li>○ 제28조(무연분묘의 처리)</li> <li>○ 제31조(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li> <li>○ 제35조(과징금 처분)</li> <li>○ 제37조(검사 및 보고)</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7조(아동전용시설의 설치)</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아동복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2조(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의료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li> <li>○ 제33조(개설)</li> <li>○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li> <li>○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li> <li>○ 제48조(설립 허가 등)</li> <li>○ 제49조(부대사업)</li> <li>○ 제51조(설립 허가 취소)</li> <li>○ 제59조(지도와 명령)</li> <li>○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li> <li>○ 제63조(시정 명령 등)]</li> <li>○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li> <li>○ 제69조(의료지도원)</li> <li>○ 제84조(청문)</li> <li>○ 제92조(과태료)</li> </ul> </li> </ul>
------	--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의료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9조(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li> </ul> <input type="checkbox"/> 의료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조(의료기관 개설허가)</li> <li>○ 제28조(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li> <li>○ 제30조(폐업·휴업의 신고)</li> <li>○ 제32조(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li> <li>○ 제50조(설립등기 등의 보고)</li> <li>○ 제51조(정관변경허가신청)</li> <li>○ 제52조(임원 선임의 보고 등)</li> <li>○ 제53조(재산의 증가 보고)</li> <li>○ 제54조(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li> <li>○ 제56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li> <li>○ 제57조(해산신고)</li> </ul> <input type="checkbox"/>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등록)</li> <li>○ 제4조(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li> </ul> <input type="checkbox"/> 약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조(약국 개설등록)</li> <li>○ 제22조(폐업 등의 신고)</li> <li>○ 제23조(의약품 조제)</li> <li>○ 제41조(약국제제의 제조)</li> <li>○ 제45조(의약품 판매업의 허가)</li> <li>○ 제47조의2(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li> <li>○ 제50조(의약품 판매)</li> <li>○ 제69조(보고와 검사 등)</li> <li>○ 제70조(업무 개시 명령 등)</li> <li>○ 제71조(폐기 명령 등)</li> <li>○ 제72조(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li> <li>○ 제73조(검사명령)</li> <li>○ 제74조(개수명령)</li> <li>○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li> <li>○ 제77조(청문)</li> <li>○ 제78조(약사감시원)</li> <li>○ 제81조(과징금처분)</li> <li>○ 제98조(과태료)</li> </ul> <input type="checkbox"/> 약사법 시행규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3조(한약업사의 허가신청)</li> <li>○ 제57조(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li> <li>○ 제59조(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li> <li>○ 제86조(면허증·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li> <li>○ 제88조(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li> </ul>
------	--

관계법령

- 제89조(폐업 등의 신고)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3(응급의료위원회)
  - 제14조(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 제15조(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 제16조(재정지원)
  - 제18조(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 제22조(미수금의 대불)
  - 제22조의2(자료의 제공)
  - 제26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제29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제30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 제34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 제35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 제45조(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 제50조(지도·감독)
  - 제51조(이송업의 허가 등)
  - 제53조(휴업 등의 신고)
  - 제54조(영업의 승계)
  - 제55조(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 제56조(청문)
  - 제57조(과징금)
  - 제62조(과태료)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 제7조(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 제8조(허가증 등의 양도금지와 폐업 등의 신고 등)
  - 제10조(구입서·판매서)
  - 제12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 제13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 제26조(마약류도매업자)
  - 제27조(마약의 도매보고)
  - 제29조(마약의 소매보고)
  - 제33조(마약류관리자)
  - 제37조(허가 등의 제한)
  - 제40조(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 제41조(출입·검사와 수거)
  - 제42조(폐기명령 등)
  - 제43조(업무보고 등)
  - 제44조(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 제45조(청문)
  - 제46조(과징금처분)
  - 제69조(과태료)

관계법령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 학교보건법 시행령
  -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10조의2 <삭제>
  - 제18조(운행정지명령 등)
  - 제21조(보고 및 검사)
  - 제28조(과태료)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제13조의2(인가·허가 등의 의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3조(사업의 허가 등)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9조(권한의 위임·위탁)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제10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 제12조(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 제31조(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 제40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 제66조(보고 및 검사 등)
  - 제78조(과태료)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 제51조(업무의 위탁)
- 전기사업법
  - 제88조(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 제89조(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
  -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36조(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 제40조(가산금 및 독촉)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 제28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의 기록·관리)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38조(공사시행 인가 등)
  - 제39조(사용 개시)
  - 제40조(사용약관)
  - 제41조(시설 사용료)
  - 제42조(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 제43조(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 제44조(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 제45조(사용명령)
  - 제48조(준용규정)
  - 제79조(보고·검사 등)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 제88조(과징금 처분)
  - 제92조(벌칙)
  - 제94조(과태료)
- 도로법
  -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시행령
  - 제29조(도로공사계획의 공고)
  -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 도로법 시행규칙
  - 제34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 국민체육진흥법
  -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국민체육진흥법
  -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제25조(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 제2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 제46조(과태료)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30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 제38조(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 환경영향평가법
  - 제14조(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법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3조(평가서초안의 제출)</li> <li>○ 제14조(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등)</li> <li>○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li> <li>○ 제17조(설명회의 개최)</li> <li>○ 제18조(공청회의 개최 등)</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소음·진동규제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8조(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li> <li>○ 제15조(개선명령)</li> <li>○ 제16조(조업정지명령 등)</li> <li>○ 제17조(허가의 취소 등)</li> <li>○ 제1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li> <li>○ 제20조(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li> <li>○ 제47조(보고와 검사 등)</li> <li>○ 제51조(청문)</li> <li>○ 제60조(과태료)</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3조(재정지원)</li> <li>○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li> <li>○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li> <li>○ 제61조(보고와 검사)</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공유수면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4조(공유수면의 관리)</li> <li>○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li> </ul> </li> </ul>
<p>관련법규 정비대상</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p>관련자료</p>	<p style="text-align: center;">“해당사항 없음”</p>

# 관계법령 발췌사항

## 회계계약심사과

###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제36조 (일반재산의 매각)**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매각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2.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익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 의하여 분양을 하는 경우
4.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산화하기 위하여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7조 (매각대금의 납부)** ①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은 그 전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한꺼번에 내야 한다. 다만, 매각대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일반재산 중 동산(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제1항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8조 (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하면 지체 없이 그 권리의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노인정책과

###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매장· 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①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화장을 하려는 자는 화장시설(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2.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3. 봉안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는 경우 : 개장지

④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또는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및 신고증명서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 (묘지의 일제 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8조에 따른 무연분묘(無緣墳墓)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 및 구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①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무연고 시체(無緣故 屍體)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과 그 기간이 끝난 후의 처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① 국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1.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해당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 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2. 가족묘지 :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3. 종중·문중묘지 : 종중이나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4.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같은 구역 안에 설치하는 묘지
- ② 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④ 시장등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 법인에 한정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할 수 있다.
- ⑤ 시장등이 제3항에 따른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사설묘지의 설치면적, 분묘의 형태,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시설(이하 "사설화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봉안시설(이하 "사설봉안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설화장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사설봉안시설의 시공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시설 신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③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관리하려는 자는 「**민법**」에 따라 봉안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 또는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에 따라 친족관계였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였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설 화장시설 및 사설 봉안시설의 면적, 설치장소, 그 밖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① 제19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하여야 한다.

②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 및 화장·봉안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미리 기간을 정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4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① 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법인묘지·사설 화장시설·사설 봉안시설 또는 사설 자연장지를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 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26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제14조제3항 또는 제16조제3항에 따라 허가 받은 사설묘지 또는 사설 자연장지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사설 화장시설·사설 봉안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8조 (무연분묘의 처리)**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일제 조사 결과 연고자가 없는 분묘(이하 "무연분묘"라 한다)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 기간 봉안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뜻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봉안한 유골의 연고자가 확인을 요구하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봉안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1조 (사설묘지 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시장등은 사설묘지·사설 화장 시설·사설봉안시설 및 사설자연장지의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고자 또는 설치·조성자에게 묘지·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의 이전·개수, 허가취소, 시설의 폐쇄, 시설의 전부·일부의 사용 금지 또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4조제3항** 또는 제6항, **제17조** 또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한 때
2. **제15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설 화장 시설 또는 사설봉안시설을 설치한 때
3. **제16조** 또는 **제17조**를 위반하여 자연장지를 조성한 때
4. **제24조**에 따른 신고 의무, 가격게시 의무 또는 게시된 가격 외의 금품징수금지 의무를 위반한 때
5. **제25조**를 위반하여 관리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때

**제35조 (과징금 처분)** ① 시장등은 **제31조** 또는 **제32조**에 따라 법인묘지·사설 화장 시설·사설봉안시설 또는 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와 장례식장영업자에 대한 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처분이 이용자에게 큰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현저하게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그 처분을 대신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시장등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37조 (검사 및 보고)** ① 시장등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법인묘지·사설 화장 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 또는 장례식장에 출입하여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법인묘지·사설 화장 시설·사설봉안시설·사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자 또는 장례식장영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법인묘지 등에 출입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아동청소년과

### □ 아동복지법

제17조 (아동전용시설의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아동전용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오락시설·교통 기타 서비스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아동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편의설비를 갖추고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아동전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2조 (아동전용시설의 입장료 등의 감면)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 있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입장료와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어린이날과 국경일을 제외하고는 그 시설의 관리기관이 당해 시설을 설치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전용시설 기타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한 입장료와 이용료 등을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 보건정책과

### □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제33조(개설)** ①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④제2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개설하려는 의료기관이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

**제35조(의료기관 개설 특례)** ①제33조제1항·제2항 및 제8항에 따른 자외의 자가 그 소속 직원, 종업원, 그 밖의 구성원(수용자를 포함한다)이나 그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속 의료기관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그 개설 장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폐업·휴업 신고와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48조(설립 허가 등)** ①제33조제2항에 따른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의 서류를 갖추어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9조(부대사업)** ①의료법인은 그 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무 외에 다음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사업으로 얻은 수익에 관한 회계는 의료법인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1. 의료인과 의료관계자 양성이나 보수교육
  2. 의료나 의학에 관한 조사 연구
  3. 「노인복지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장례식장의 설치·운영
  5.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운영
  6. 의료업 수행에 수반되는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7. 그 밖에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환자 또는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의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타인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대사업을 하려는 의료법인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1조(설립 허가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정관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업을 한 때

2. 설립된 날부터 2년 안에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때
3. 의료법인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제64조에 따라 개설허가를 취소당한 때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감독을 위하여 내린 명령을 위반한 때
5. 제49조제1항에 따른 부대사업 외의 사업을 한 때

**제59조(지도와 명령)**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61조(보고와 업무 검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업무 상황, 시설 또는 진료기록부·조산기록부·간호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서 진술을 들어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제63조(시정 명령 등)**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제16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제2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말한다)·제3항(외국인환자 유치업자를 포함한다)·제5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1항](#)·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5조](#), [제46조](#), [제47조제1항](#), [제5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7조제1항](#), [제58조제5항](#), [제62조제2항](#)을 위반한 때 또는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전문병원이 각각 [제3조의3제1항](#)·[제3조의4제1항](#)·[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64조(개설 허가 취소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의료업을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하거나 의료기관 폐쇄를 명하여야 하며, 의료기관 폐쇄는 [제33조제3항](#)과 [제3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신고한 의료기관에만 명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나 개설 허가를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한 때
  2.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3.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기피 또는 방해하거나 [제59조](#) 또는 [제6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4. [제33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법인](#)·[비영리법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설립허가](#)가 취소되거나 해산된 때
  5. [제33조제5항](#), [제40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때
  6. [제63조](#)에 따른 시정명령([제27조의2제1항](#)·제3항·제5항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약사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합행위를 한 때
  8. 의료기관 개설자가 거짓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때
- ② 제1항에 따라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소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업 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 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다만, 제1항제8호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 명령을 받은 자는 취소당한 날이나 폐쇄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 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제69조(의료지도원)** ① [제6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에 의료지도원을 둔다.

② 의료지도원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자격과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4조(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51조에 따른 설립 허가의 취소
2. 제63조에 따른 시설·장비 등의 사용금지 명령
3. 제64조제1항에 따른 개설허가 취소나 의료기관 폐쇄 명령
4. 제65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취소

제92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한 자
2. 제37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46조제3항을 위반하여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

②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0조제3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수교육(補修教育)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33조제5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0조제1항(제8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진료기록부등을 이관(移管)하지 아니한 자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5. 제43조제5항에 따른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의료법 시행령

제19조 (의료법인의 설립허가신청)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의료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 의료법 시행규칙

제27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①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또는 요양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개설하려는 자가 법인(의료법인은 제외한다)인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은 제외한다), 정관 및 사업계획서
  2. 개설하려는 자가 의료인인 경우: 면허증 사본과 사업계획서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5. 「의료법」 제45조에 따른 의료보수를 적은 표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7호서식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분기별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상황을 매 분기가 끝난 후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을 발급한 때에는 의료기관별로 관리카드를 작성·비치하여 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및 행정처분 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 ① 법 제33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허가를 받은 자가 그 개설 장소를 이전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설허가 사항의 변경허가를 받으려면 의료기관 개설허가증과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6호서식의 허가사항 변경신청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5>

1. 의료기관 개설자의 변경 사항
  2.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 변경 또는 진료과목의 변동 사항
  3. 진료과목 증감이나 입원실 등 주요시설 변경에 따른 시설 변동 내용
  4. 의료기관의 명칭 변경 사항
  5. 의료기관의 의료인 수 및 인적사항의 변동 사항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한 때에 의료기관 개설허가증을 고쳐쓸 필요가 있으면 이를 개서하여 주거나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0조 (폐업·휴업의 신고)** ① 법 제40조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하려면 별지 제18호서식의 신고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매월의 의료기관 폐업신고의 수리 상황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법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원·치과의원·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한 의료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3개월을 초과하여 그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개설자는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9>
- ④ 법 제40조제2항 단서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진료기록부등을 직접 보관하려면 별지 제19호서식의 진료기록 보관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전까지 관할 보건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2. 진료기록부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전한 보관계획에 관한 서류



**제32조 (부속 의료기관의 개설 특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의료인·의료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외의 자가 그 종업원 및 가족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부속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별지 제20호서식의 부속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또는 개설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속 의료기관에 관하여는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 제2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2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제50조 (설립등기 등의 보고)** 의료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 등기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각 등기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등기보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1조 (정관변경허가신청)**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관 변경 이유서
2. 정관개정안(신·구 정관의 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정관 변경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4. 정관 변경에 따라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신·구 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 (임원 선임의 보고 등)** ① 의료법인은 임원을 선임(選任)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임원선임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에 선임된 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再任)된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서류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1. 임원 선임을 의결한 이사회 회의록
2. 이력서(반명함판사진 첨부)
3. 취임승낙서

**제53조 (재산의 증가 보고)** 의료법인은 매수(買受)·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법인의 재산에 편입시키고 재산증가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득사유서
2. 취득한 재산의 종류·수량 및 금액을 적은 서류
3. 취득한 재산의 등기부등본 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

**제54조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 ① 영 제21조에 따라 의료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 또는 교환하거나 담보로 제공(이하 "처분"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

는 기본재산의 처분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처분 1개월 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유서
  2. 처분재산의 목록 및 감정평가서(교환인 경우에는 쌍방의 재산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3. 이사회회의 회의록
  4. 처분의 목적, 용도, 예정금액, 방법과 처분으로 인하여 감소될 재산의 보충 방법 등을 적은 서류
  5. 처분재산과 전체재산의 대비표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에 따라 허가를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6조 (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시·도지사는 **의료법인**을 감독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료법인**에 관계되는 서류, 장부, 참고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57조 (해산신고)** ① **의료법인**이 해산(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인은 **법 제50조** 및 「**민법**」 **제8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 (등록)** ① 「**의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에 따른 특수의료장비(이하 "특수의료장비"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나 관리자(이하 "개설자등"이라 한다)는 해당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특수의료장비를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1**의 운용인력기준에 해당하는 특수의료장비를 운용할 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을 한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3. **별지 제2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로서 다른 의료기관과 공동활용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특수의료장비가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고,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하며, 설치인정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 (등록사항의 변경 통보 등) ①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인력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별지 제5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인력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특수의료장비 관련 변경인력의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및 방사선사 면허증 사본 각 1부

2. 시설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설치의료기관의 종류 또는 병상수를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다. 변경된 공동활용 의료기관의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 사본 및 병상수 확인서 각 1부(유방 촬영용 장치 외의 특수의료장비의 공동활용에 동의한 의료기관을 변경한 경우에만 첨부한다)

3.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특수의료장비의 용도 또는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 :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변경통보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첨부할 것

가.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 원본 1부

나. 변경사항이 적혀 있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명서 또는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명칭이 변경되거나 의료기관이 개설장소를 이전하여 특수의료장비 설치장소가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변경사항이 제3조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설치인정기준에 맞다고 인정하면 특수의료장비 등록증명서를 고쳐 적거나 재발급하고, 변경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③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은 특수의료장비를 양도 또는 폐기하거나 사용중지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적어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그 사실을 별지 제4호서식의 특수의료장비 등록대장(전자문서로 된 대장을 포함한다)에 적어야 한다.

⑤ 다른 의료기관이 설치한 특수의료장비를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였던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별도로 특수의료장비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동활용하였던 특수의료장비를 설치한 의료기관의 개설자등이 먼저 제1항에 따라 시설등록사항의 변경통보를 한 후 제2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 □ 약사법

**제20조 (약국 개설 등록)** ①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②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 (폐업 등의 신고)** 약국개설자는 약국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하였던 약국을 다시 연 경우에는 폐업·휴업 또는 다시 연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 (의약품 조제)** ①약사 및 한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으며,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의 학생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

**제41조 (약국제제의 제조)** ①약국개설자가 약국제제를 제조하거나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하려는 품목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제제를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약국제제 및 조제실제제의 범위·조제실 시설,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의약품 판매업의 허가)** ①제44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한약업사 및 의약품도매상이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한약업사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약업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허가한다.

④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한약업사는 환자가 요구하면 기존 한약서에 실린 처방 또는 한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한약을 혼합 판매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의약품 도매상은 약사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한약 도매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두고 업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의약품 도매상 자신이 약사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한약 도매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업무를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약사
  2. 한약사
  3. 한약업사
  4.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학의 한약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 ⑥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의2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 지정·운영 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 및 사용내역 등 의약품유통정보의 수집·조사·가공·이용 및 제공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의약품 유통정보관리기관(이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0조 (의약품 판매)** ①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하는 경우 외에는 전문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법」에 따른 동물병원 개설자에게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때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복약지도를 할 수 있다.

**제69조 (보고와 검사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1.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판매업자, 그 밖에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2.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의료기관, 의약품등을 제조·저장 또는 취급하는 공장·창고·점포나 사무소, 그 밖의 의약품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하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 또는 관계인에 대한 질문

3. [제71조제1항](#)에 해당된다고 의심되는 물품·의약품등의 품질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 분량의 물품 수거

②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권한 및 직무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0조 (업무 개시 명령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공동으로 의약품의 생산·판매를 중단하거나 집단 휴업 또는 폐업을 하여 의약품 구매에 현저한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에게 의약품을 생산하게 하거나 업무를 개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의약품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71조 (폐기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53조제1항·제61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판매·저장·진열·제조 또는 수입한 의약품등이나 불량한 의약품등 또는 그 원료나 재료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2조 (의약품등의 회수 등 사실 공표)**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의약품등의 회수계획을 보고받으면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의약외품 제조업자 또는 의약품등의 수입자에게 회수계획을 공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1조제2항**에 따라 유통 중인 의약품등을 회수·폐기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한 경우에는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약외품 제조업자·의약품등의 수입자·판매업자, 약국 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취급할 수 있는 자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표의 방법이나 그 밖에 공표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3조 (검사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의약품등의 제조업자나 수입자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제조·수입한 의약품등에 관한 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제74조 (개수명령)**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나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

설 기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 낡거나 더럽거나 손상되어 그 시설로 의약품등을 제조하면 의약품등이 제62조(제6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될 염려가 있으면 시설을 개수(改修)하도록 명하거나 개수가 끝날 때까지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못하게 명할 수 있다.

**제76조 (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①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 또는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에게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약국 개설자나 의약품 판매업자에게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제31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업종만 해당한다. 이하 제77조제1호에서 같다), 품목제조 금지나 품목수입 금지를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 그 업자에게 책임이 없고 그 의약품등의 성분·처방 등을 변경하여 허가 또는 신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 성분·처방만을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2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31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국민보건에 위해를 주었거나 줄 염려가 있는 의약품등과 그 효능이 없다고 인정되는 의약품등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경우
  5. 제39조제1항에 따른 회수 또는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6. 약국 개설자가 제79조제2항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②제1항에 규정된 자의 시설이 제20조제3항, 제31조제1항·제4항, 제42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에 따른 시설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6조에 따른 허가·승인·등록의 취소 또는 위탁제조판매업소·제조소 폐쇄, 품목제조금지명령, 품목수입금지명령
2. 제7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면허취소

**제78조 (약사감시원)** ①제69조제1항과 제71조제2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특별시 및 광역시의 자치구를 말한다)에 약사감시원(藥事監視員)을 둔다.

- ②약사감시원은 해당 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시·군·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한다.
- ③약사감시원의 자격·임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 (과징금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의약품등의 제조업자·품목허가를 받은 자·수입자·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 판매업자가 제76조에 따라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게 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약국개설자가 제7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되는 경우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은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제9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를 위반하여 약사·한약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에 따른 연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약국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4. 제22조 또는 제40조를 위반하여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38조제2항(제4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약품등의 생산 실적 또는 수입 실적 등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6. 제39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약국제제 또는 조제실제제 제조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7의2.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의약품 공급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8.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80조를 위반하여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지 아니한 자
10. 제85조제3항을 위반하여 동물용 의약품의 사용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제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 약사법 시행규칙

**제53조 (한약업사의 허가신청)** ① 법 제45조에 따라 한약업사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사진 2장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7조 (한약업사의 영업소 이전)** ① 한약업사가 그 영업소(이하 "한약방"이라 한다)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56조**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한약방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관할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이전하려는 지역의 관할 시·도지사가 한의사·한약업사의 수급조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59조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신청)** ① **법 제45조**에 따라 의약품 도매상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6조 (면허증·허가증과 등록증의 갱신)** ① **법 제80조**에 따라 약사면허증, 한약사면허증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약품등의 제조업(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 및 한약재제조업은 제외한다)허가증·품목허가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 허가증 및 한약재제조업 허가증은 지방청장이, 의약품판매업 허가증은 시·도지사가, 약국개설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이를 각각 갱신한다.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갱신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갱신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면허증·허가증 또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되, 약사면허증·한약사면허증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의약품등의 제조업허가증·품목 허가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 허가증 및 한약재제조업 허가증은 지방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 허가증은 시·도지사에게, 약국개설등록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면허증·한약사면허증·약품개설등록증 및 의약품 도매상 허가증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그 신청인(법인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의 사진 2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 (허가사항 등의 변경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1조제7항**, **법 제42조** 또는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수입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그 허가받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또는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허가증 또는 신고증과 변경사유서

(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 및 그 근거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료용고압가스제조업, 한약재제조업, 의약품제조업 및 신고대상 원료의약품 외의 신고품목 변경은 지방청장)에게, 의약품판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법 제32조**에 따른 신약 등의 재심사, **법 제33조**에 따른 의약품 재평가, **제29조**에 따른 안전성·유효성 심사의 결과에 따라 품목을 변경하거나 **제43조제3호**에 따른 안전성정보 보고 결과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일정기한까지 품목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경우 또는 **법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른 대한약전 및 의약품등의 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지방청장이 변경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89조 (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2조**, **법 제40조** 및 **법 제45조**에 따라 약국 개설자,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자 또는 의약품판매업자가 폐업·휴업 또는 재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에 따른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약국개설등록증, 의약품등의 제조업 허가증, 위탁제조판매업 신고증 또는 의약품판매업의 허가증을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지방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약품등 제조업의 폐업인 경우에는 모든 제조품목의 허가증·신고필증을, 휴업인 경우에는 그 사유서(전자문서로 된 사유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 (응급의료위원회)** ①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1. 구급차등의 운전자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
3. 「**학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보건교사
4. 도로교통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에 규정된 경찰공무원등
5.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의 대상자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10조**의 체육시설에서 의료·구조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7.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22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8.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9. 「항공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종사자 또는 객실승무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0. 「철도안전법」 제2조제1호기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철도종사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11. 「선원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선원 중 의료·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②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응급의료 통신망의 구축)**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 (재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미수금의 대불)** ①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 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으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④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 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그 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⑤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황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⑥미수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황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의2 (자료의 제공)** ①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수금 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의 협의하여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환자의 진료

2. 대형 재해 등의 발생시의 응급의료지원

3. 권역안의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4.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권역안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②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시·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①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당직의료기관의 지정)**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휴일 또는 야간 그 밖에 응급환자 진료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응급환자의 응급의료를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의료기관의 종별·진료과목별 및 진료기간별로 당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이들로 하여금 응급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5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권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2. 이 법에 의하여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처분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

**제45조 (다른 용도에의 사용금지)** ①구급차등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응급환자 이송
2. 응급의료를 위한 혈액, 진단용 검체 및 진료용 장비 등의 운반
3. 응급의료를 위한 응급의료종사자의 운송
4. 사고 등에 의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거나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의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송
5. 기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용도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 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급차등의 말소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당해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제50조 (지도·감독)**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서 운용되는 구급차등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구급차등의 운용상황과 실태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정지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1조 (이송업의 허가 등)** ①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3조 (휴업 등의 신고)** 이송업자는 이송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4조 (영업의 승계)** ①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그营业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营业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营业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 (응급의료종사자의 면허·자격정지 등)**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제6조제2항 제8조 제18조제2항 제39조 제40조 또는 제49조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3.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환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하게 한 때
4. 제37조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5. 제4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처치를 한 때
6.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7.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营业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8조제2항, 제28조제3항, 제32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35조의2, 제44조제3항, 제45조제1항, 제47조제1항, 제48조, 제49조제3항, 제51조제3항 내지 제5항, 제52조제1항,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수금의 대불을 부정하게 청구한 때
3.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송처치료를 과다하게 징수한 때
4.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 응급의료를 하지 아니한 때
5.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등을 따르지 아니한 때
6.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营业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6조 (청문)**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또는 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7조 (과징금)**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

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영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경우에는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각각 이를 징수한다.

**제6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1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인력·장비 등을 유지·운영하지 아니한 자

2. 제3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자로 하여금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 등을 사용 또는 외부에 표기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 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허가·지정)** ①마약류취급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마약류수출입업자는 **약사법**에 의한 수입자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의약품품목 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한 자
  2. 마약류제조업자·마약류원료사용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의약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자
  3. 마약류도매업자는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개설자 또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은 자
  4.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에서 학술연구를 위하여 마약류의 사용을 필요로 하는 자
  5. 대마재배자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섬유 또는 종자를 채취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하고자 하는 자
- ②마약류관리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로서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 (허가증 등의 교부와 등재)**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명부에 등재하고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허가 또는 지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잃어버렸거나 못쓰게 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받아야 한다.

**제8조 (허가증 등의 양도금지 및 폐업 등의 신고 등)** ①마약류취급자는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대여하거나 양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마약류취급자가 마약류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그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각호의 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사망한 때 : 상속인(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무능력자가 된 때 : 후견인
3. 법인이 해산한 때 : 청산인
4. 학술연구를 종료한 때 :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제10조 (구입서·판매서)** ①마약류취급자는 다른 마약류취급자와 마약을 매매 기타 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도지사가 발행하는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의 용지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 교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는 교환한 날부터 2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개정 2008.3.28>)** ①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얻은 자는 그 소지하는 마약류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또는 신고관청, 마약류소매업자의 경우에는 약국개설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재해로 인한 상실
2. 분실 또는 도난
3. 변질·부패 또는 파손

② 마약류취급자 또는 마약류취급의 승인을 받은 자가 소지하고 있는 마약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하여야 한다.

1.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2.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의 경과
3.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으나 재고관리 또는 보관상의 곤란한 사유

**제13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마약류취급자(마약류관리자를 제외한다)가 **제8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당해 마약류취급자·상속인·후견인·청산인 및 합병후 존속 또는 신설된 법인은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상속인 또는 법인이 마약류취급자인 경우에는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이를 양도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대마재배자의 상속인이나 그 상속재산의 관리인·후견인 또는 법인이 대마재배자가 되고자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 (마약류도매업자)** ①마약류도매업자는 그 영업소가 소재하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내의 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마약류관리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외의 자에게 마약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마약류도매업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마약류도매업자·마약류소매업자·마약류취급의료업자 또는 마약류관리자외의 자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당해 허가관청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 (마약의 도매보고)** 마약을 취급하는 마약류도매업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당해 허가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 (마약의 소매보고)** 마약류소매업자가 마약을 판매한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판매에 관한 사항을 약국 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3조 (마약류관리자)** ①4인 이상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의료에 종사하는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그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마약류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다른 마약류관리자(다른 마약류관리자가 없는 경우에는 후임 마약류관리자가 결정될 때까지 당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게 관리중의 마약류를 인계하게 하고 그 이유를 당해 허가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자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제37조 (허가 등의 제한)** 허가관청은 제6조·제18조·제21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지정을 함에 있어서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상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을 한정하여 허가 또는 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지역 또는 특정품목에 관한 사항은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 ①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사용자의 마약류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중독자로 판명된 자를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 (출입·검사와 수거)**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 및 원료물질의 취급을 감시하고 단속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의 업무소·공장·창고·대마초 재배지·약국·조제장소 그 밖에 마약류 및 원료물질에 관계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그 구조·설비·업무현황·기록서류·의약품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하거나 시험용으로 필요한 최소분량에 한하여 마약류·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2.12.26, 2008.2.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 또는 수거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2조 (폐기 명령 등)**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마약류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못한 마약류 및 제16조·제17조·제18조·제21조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조·판매·저장 또는 수입한 향정신성의약품이나 불량한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폐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마약류취급자에게 명할 수 있다.

②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물품을 폐기하거나 압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대마재배자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3조제5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원료물질이 제조·수출입·매매·매매의 알선·수수·소지·소유 또는 사용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저장된 원료물질이 발견된 때

**제43조 (업무보고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취급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장부 및 서류 기타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44조 (허가 등 취소와 업무정지)** ①마약류취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허가관청은 이 법에 의한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쳤거나 또는 끼칠 우려가 있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자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성분·처방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허가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때

나.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조 제2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한 때

다. 제7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재교부받지 아니한 때

라. 제9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마약류를 양도한 때

마. 제10조제1항에 따른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교환하지 아니하고 마약을 매매·수수한 때

바.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존하지 아니한 때

사. 제11조를 위반하여 장부를 비치·기록·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아. 제12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사고마약류 등을 폐기한 때

자. 제14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광고한 때

차. 제15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저장한 때

카. 제16조를 위반하여 마약류를 봉합하지 아니하거나 봉합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한 때

타. 제17조를 위반하여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때

파. 제19조·제23조·제25조·제27조 및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때

하. 제20조·제22조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판매한 때

거. 제32조를 위반하여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약 등을 하거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한 때 및 처방전을 작성·비치·보존하지 아니한 때

너. 제33조를 위반하여 마약류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때

더. 제3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록·보존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때

러. 대마재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년간 계속하여 대마초를 재배하지 아니한 때

- 며. 제38조에 따른 관리의무를 위반한 때
- 버. 제41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검사·질문·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때
- 서. 제50조를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 2. 허가(품목허가를 포함한다) 또는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 가. 제6조제3항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때
  - 나. 제18조제2항·제21조제2항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때
  - 다. 제1호가목·카목·버목 또는 제9조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때
  - 라. 제1호사목·아목·너목 또는 제9조제3항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 마. 마약의 유효성분 함량이나 제제상 손실율 등에 대하여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때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45조 (청문)** 허가관청은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제46조 (과징금처분)** ①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에 대하여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정지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는 업무정지처분으로 인하여 국민보건에 큰 위해를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는 때에 한하며, 3회를 초과하여 부과할 수 없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허가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69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구입서 및 마약판매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3.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소매업자가 의료 또는 동물진료·조제의 목적으로 소지한 향정신성의약품이 장부에 기재된 재고량과 차이가 있는 때
4.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제12조제1항, 제19조, 제23조, 제25조, 제27조, 제29조,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15조를 위반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을 저장한 자
7. 제32조제3항을 위반한 자
8.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마약류 인계 후 그 이유를 당해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장부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종별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27. 「**약사법**」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제41조 및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약국 개설등록, 폐업 등의 신고, 의약품 조제, 약국제제의 제조, 의약품의 판매 등에 관한 사무

**위생정책과**

**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로 구분하여 설정하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예정지의 경우에는 설립될 학교의 출입문 설치 예정 위치를 말한다)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인 지역으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예정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그에 관한 사항을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알리고, 그 설정일자 및 설정구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정화구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게시판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1. 정화구역의 위치 및 면적
2. 정화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면

## 기업지원과

###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 제10조의2 삭제 <2008.1.17>

**제18조 (운행정지명령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3조에 따른 검사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승강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승강기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하는 경우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21조 (보고 및 검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그 인력·장비·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다음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보수업자: 기술인력, 보수 대수, 보수계약을 체결한 승강기 관리주체의 현황
2. 승강기 관리주체: 자체점검, 운행관리자, 사고의 현황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로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영업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검사를 하려면 검사 7일 전까지 검사의 일시, 이유 및 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를 받는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해당 공무원의 성명, 출입 시간 및 출입 목적 등이 적혀 있는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승강기 보수용부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확보·제공하지 아니하거나 제공을 지연한 자
  2. 제11조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4.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한 자 또는 점검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존한 자
  5.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영의 중지를 방해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승강기관리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21조의2에 따른 정밀안전검사 결과 등 현지 확인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제2항제2호를 위반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인가·허가 등의 의제) 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할 때 해당 공장 및 진입로 부지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신고·면허·승인·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5항 본문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제5항 단서에 따라 협의가 생략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에너지정책과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 제19조 (권한의 위임·위탁)

②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0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등) ① 석유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물인 석유제품의 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 중 시설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거나 신고하여야 하는 석유판매업의 종류와 그 취급 석유제품 및 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석유판매업자의 결격사유, 지위 승계 및 처분 효과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석유정제업"은 "석유판매업"으로 보며, 제7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석유정제시설"은 "석유판매시설"로 보고, 제8조 중 "석유정제업자"는 "석유판매업자"로, "제13조제1항"은 "제13조제3항"으로 본다.

##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석유판매업의 등록 및 신고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대리점 및 용제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대리점·용제대리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



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1호가목의 비고 제2호에 따라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선박급유업을 하기 위하여 일반대리점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항만운송사업등록증 사본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서(석유제품 공급자와 체결한 석유제품 공급계약의 내용을 포함한다)
2.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3.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4. 수송장비 명세서 또는 보유계획서(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에서 주유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한다)
2. 주유기 명세서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③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용제판매소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출자총액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⑦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석유판매업 중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항공유판매업·특수판매소)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와 그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자기 소유 또는 독점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

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에서 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또는 특수판매소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 옥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3.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지하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4.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간이탱크저장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마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6.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6 I 제2호바목에 따른 일반취급소의 완공검사필증 사본

##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1조 (에너지다소비사업자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에너지사용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에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해당 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에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적 및 해당 연도의 계획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에너지관리자"라 한다)의 현황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이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위해방지 및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기준과 선임기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검

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이나 퇴직 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을 연기할 수 있다.

**제66조 (보고 및 검사 등)** ①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효율관리기자재·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고효율에너지인증대상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및 각 시험기관,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진단기관과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 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이나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8조 (과태료)** ①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진단을 받지 아니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경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자.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사업주관자는 제외한다.

2. **제34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66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또는 에너지소비효율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를 한 자

2. **제15조제4항**에 따른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9호 및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

1. **제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수요관리투자계획과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3.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
  5.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사업주관자
  6.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나 실태 파악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업주관자
  7.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8. 제20조제3항 또는 제22조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대기전력 저감우수제품 또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지 아니한 자
  9.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 9의2.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 9의3.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 9의4. 제39조제7항 또는 제40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10. 제50조를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1.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2. 제66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51조(업무의 위탁)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 전기사업법

제88조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9조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2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교통기획과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도시교통정비지역에서 교통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매년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있는 시설물로서 그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그 시설물의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주한 외국 정부기관, 주한 국제기구 및 외국 원조단체 소유의 시설물
2. 주거용 건물(복합용도 시설물의 주거용 부분을 포함한다)
3. 그 밖에 교통유발량(交通誘發量)이 현저히 적거나 공익상 불가피한 사유로 부담금 부과가 적절하지 아니한 시설물 또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단체 등 비영리공공단체가 직접 업무에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④ 부담금의 부과·징수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부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간에 그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부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에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징수한 후 과소 또는 과다 부과·징수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 그 차액(差額)을 추징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과오납금(過誤納金)의 처리는 「지방세법」을 준용한다.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28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내용의 기록·관리) 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을 때에는 이에 관한 대장(臺帳)을 부과한 날부터 5년 이상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 대중교통과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8조 (공사시행 인가 등) ① 제36조제1항에 따라 터미널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시설하려는 터미널의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시·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공사시행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 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공사계획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설비 기준 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행을 인가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까지 인가를 신청할 수 없으면 터미널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터미널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공사를 끝낸 경우 시·도지사의 시설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 (사용 개시)** 터미널사업자는 제38조제4항의 시설 확인을 받은 후 시·도지사가 지정한 기간까지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사용 개시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40조 (사용약관)** ① 터미널사업자는 사용약관을 정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용약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사용약관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 (시설 사용료)** ① 터미널사업자는 그 터미널을 사용하는 운송사업자(이하 "터미널사용자"라 한다)에게서 시설 사용료를 받으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시설 사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인가기준 등 시설 사용료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2조 (터미널사업자의 준수 사항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부당하게 터미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지 아니할 것
2. 터미널 사용료를 부당하게 차별하지 아니할 것
3. 대합실·화장실 등 부대시설을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할 것

②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구조와 설비를 제38조제2항의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업자가 제1항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유지·관리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것을 시정(是正)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3조 (위치·규모와 구조·설비의 변경 등)** ① 터미널사업자는 터미널의 위치·규모 및 구조·설비 등을 변경하려면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인가에 관하여는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4조 (터미널사업의 개선명령)** 시·도지사는 터미널사용자 및 터미널이용객의 교통 편익을 해치거나 터미널사업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터미널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터미널의 규모 및 구조의 변경과 설비의 개선·변경
2. 사용약관·시설사용료 또는 승차권 위탁판매 수수료의 변경
3. 터미널사용자와 터미널 이용객에 대한 서비스 개선, 질서 유지,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4. 교육 등 종사원의 자질 향상을 위한 조치
5. 휴일이 이어지는 등 수송 수요가 수송 능력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원활한 수송에 필요한 조치
6. 터미널사업자가 경영부실 등으로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는 경우 승차권 판매에 필요한 조치

**제45조 (사용명령)** ① 시·도지사는 터미널이 있는 주변 지역에 노선을 정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자가 자동차를 정류시키거나 여객을 승하차시키는 데에 그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면, 공중(公衆)의 편의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송망(運送網) 정비를 위하여 그 운송사업자에게 그 터미널 사용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터미널 사용을 명하는 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48조 (준용규정)** 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 및 법인의 합병, 상속, 사업의 휴업·폐업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은 제외한다), **제15조** 및 **제16조**(제2항은 제외한다)를 준용한다.

**제79조 (보고·검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그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



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제2호의 유상운송 허가의 대상 및 기간 등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83조 (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시·도지사는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는 제89조를 준용한다.

**제88조 (과징금 처분)**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그 사업정지 처분이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액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 내에 내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 호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이나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선을 운행하여서 생긴 손실의 보전(補填)
2. 운수종사자의 양성, 교육훈련, 그 밖의 자질 향상을 위한 시설과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을 건설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 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 개선이나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의 목적을 위한 보조나 용자
7. 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 또는 근절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⑤ 시·도지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 계획의 수립·시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09.5.27>
2. 제9조제1항에 따른 운송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한 자
4. 제11조(제35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자
5. 제13조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관리위탁한 자
6. 제14조(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법인을 합병한 자
7. 삭제 <2009.5.27>
8. 제16조(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
9. 자동차대여사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제31조제1항에 따른 대여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대여약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한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11. 제34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
12. 제38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 사용을 시작한 자
13. 제40조제1항에 따른 사용약관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사용약관을 위반한 자
14. 제41조에 따라 시설사용료에 관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15. 제43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터미널의 위치·규모와 구조·설비등을 변경한 자

**제9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를 위반하여 운임·요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1항(제35조와 제4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납부받지 아니한 자
4. 제66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67조(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의 운임을 받은 자
  2. 제17조를 위반하여 사업용 자동차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운수종사자 취업현황을 알리지 아니한 자
  5. 제23조·제33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개선명령이나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운수종사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를 위반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기간 내에 터미널 사용을 시작하지 아니한 자
  8. 제42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45조에 따른 터미널 사용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6조에 따른 정관변경 등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11. 제65조제1항(제6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서를 제출한 자 또는 조사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3. 제79조제1항에 따른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14. 정당한 사유 없이 제79조제2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에 불응하거나 이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5. 제83조에 따른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16. 제8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등록증과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한 자
- ③ 제2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 도 로 과

### 도로법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차량의 운전자(건설기계의 조종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건설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 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 및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관리청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려면 차량의 조건과 운행하려는 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운행허가를 하여야 하며, 운행허가를 할 때에는 운행노선, 운행시간, 운행방법 및 도로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부담 등에 관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⑥ 관리청은 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관계 공무원을 차량에 동승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차량의 운행제한에 관하여는 제58조제2항을 준용한다.

## □ 도로법 시행령

제29조(도로공사계획의 공고) 관리청은 도로를 신설 또는 개축하는 공사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의 명칭
2. 공사구간
3. 공사의 시행자
4. 공사의 시행기간
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
6. 통행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5조(차량의 운행제한) ①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그 운행을 제한하는 구간의 양측과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구간
2.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

3. 기간

4. 운행을 제한하는 이유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관리청이 **법 제59조**에 따라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하중(軸荷重)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2. 차량의 폭이 2.5미터, 높이가 4.0미터(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하는 차량

3. 관리청이 특히 도로구조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

③ 관리청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비상사태 시에 도로의 구조보전과 통행의 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2항 외의 차량에 대하여도 운행을 제한할 수 있다.

④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에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2. 운행구간 및 그 총길이

3. 차량의 제원(諸元)

4. 운행기간

5. 운행목적

6. 운행방법

## □ 도로법 시행규칙

**제34조(제한차량의 운행허가 등)** ① **법 제5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차량 운행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차량검사증 또는 차량등록증

2. 차량 중량표

3.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

③ **영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경미하거나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의 구조 또는 적재화물의 특성상 분리운송이 어려운 경우로서 축하중(軸荷重)과 총중량이 운송차량 축의 수 및 축간 거리에 따라 관리청이 정하는 기준 이내인 차량

2. 운행경로가 교량 등 구조물을 통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제1호에서 정한 축하중의 기준 이내인 차량

## 체육진흥과

### □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장 체육에 관한 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지도·감독한다.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생활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경기 지도자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 및 경기 지도자를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경기 지도자의 배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생활체육지도자와 경기 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환경정책과

###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 (특정경유자동차의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기환경개선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이하 "특정경유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09.2.6>

④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도의 조례로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하도록 명령을 받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허용기준 적합 여부에 관계 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제26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보증기간"이라 한다)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에 부착한 측정기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 통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검사를 면제한다.

⑥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제4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면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

2. 대기관리권역 외의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자동차 중 대기관리권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운행하는 자동차의 소유자

⑦ 제2항에 따른 검사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⑧ 제4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장치 또는 엔진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도록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성능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⑨ 서울특별시장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8항을 지키지 아니할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도록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25조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標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이나 서울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3조제4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삭제 <2009.2.6>

3. 과실로 제26조제1항에 따라 인증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합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공급·판매한 자

4. 제26조의4제4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②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짓으로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 출입·채취 또는 검사를 기피·방해 또는 거부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25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등(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⑥ 제4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해당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⑦ 제5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등)** ①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사(재검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결과 제2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의 수급차질 등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를 할 수 없을 경우 서울특별시장등은 1회에 한하여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32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2. 제32조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 ②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정도와 그 자동차의 차종이나 차령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하여야 한다.
- ③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교체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서울특별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저공해자동차 등의 표지의 부착)** ① 서울특별시장등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여 등록하거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증명서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를 내주어야 한다.

- ②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에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종류, 유효기간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 ③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를 교부받은 자는 이를 차량에 잘 보일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④ 저공해자동차 표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자동차 표지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교체 자동차 표지의 규격, 표지의 부착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 (의견수렴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 ① 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진행이 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설명회나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 외에 전문기관 등 주민 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하려는 때에는 평가서초안을 미리 작성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과 공고·공람, 그 밖에 의견수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3조(평가서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제4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을 수렴하려는 경우에는 **제21조**에 따라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다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해당 사업지역이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2. 제1호의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외에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3.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기관의 장

4. 협의기관의 장

5.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
  6.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제출 부수 및 제출 방식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평가서초안의 공고·공람 등)** 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3조제1항**에 따라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고, 20일 이상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 등이 공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평가서초안에 대한 공람기간 및 공람장소
3.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공청회 개최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다)의 제출 시기 및 방법

②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려면 공람기간, 공람장소 등에 대하여 미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여야 하며,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관할구역에 공람장소가 1개소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승인기관장등(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초안의 일부를 제외하거나 공고 및 공람절차를 생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일부를 공고 및 공람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④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 및 공람이 실시되었을 때에는 공고 및 공람을 하였다는 사실과 전자문서로 작성된 평가서초안을 해당 시·군·구의 정보통신망 및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이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이라 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 등의 의견제출 등)** ① 주민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환경보전방안 및 공청회 개최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은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받은 주민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제1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③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되거나 통보받은 의견 및 공청회 개최 여부를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17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군·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설명회를 통합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하나 이상의 중앙 일간신문과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사업개요, 설명회 일시 및 장소 등을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제3항에 따른 공고사항을 **제14조제1항**에 따른 평가서초안의 공고사항에 포함하여 공고하여 줄 것을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한 때에는 사업자가 제3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18조(공청회의 개최 등)** ①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를 말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청회의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명 이상으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② 사업자는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일시 및 장소 등에 관하여 미리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 후 공청회를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나 이상의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 및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각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공청회 일시 및 장소
  3. 공청회 주재자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③ 사업자는 공청회가 끝난 후 7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개최 결과를 주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사업자는 평가서초안의 공람기간이 끝난 후 **법 제14조제1항** 후단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청회의 개최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항·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⑤ 공청회에서 의견진술자 추천, 공청회 주재자 선정 등 공청회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3.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무

**대기보전과**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 (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및 허가 등)** ①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종합병원의 주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신고한 사항이나 허가를 받은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공장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 경우 신고 또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 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47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 사업자로 본다.

**제15조 (개선 명령)**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에게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명할 수 있다.

**제16조 (조업정지명령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간대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공장에는 시간대별로 구분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음·진동으로 건강상에 위해(危害)와 생활환경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해당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7조 (허가의 취소 등)**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 명령을 말한다)를 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제7조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3. **제8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제9조**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5. **제13조**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6. **제16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

7. **제19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0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 사업자는 **제15조, 제16조, 제17조 또는 제18조** 본문에 따른 조치명령·개선명령·조업정지명령 또는 사용중지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 상태나 개선 완료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7조 (보고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게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생활소음·진동의 규제대상인 자
3. **제25조**에 따라 폭약을 사용하는 자
4. 자동차제작자
5. 확인검사대행자
6. 소음발생건설기계제작자등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
8. **제54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 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출입검사를 행하는공무원은그관한을 표시하는증표를자니고이를관계인에게내보여야한다

**제51조 (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7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
2. **제23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공사의 폐쇄명령
3. **제34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4. **제43조**에 따른 등록취소
5. **제45조제5항**에 따른 소음도 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제60조 (과태료)** ①다음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에게는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8조제2항**, **제19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특정 공사를 시행한 자
4.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소음·진동을 발생한 자
5. **제24조제1항**에 따른 이동소음원의 사용금지 또는 제한조치를 위반한 자
6. **제35조**를 위반한 자동차의 소유자
7. **제38조제3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6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10. **제4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수행하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는 시·도지사가 직접 수행한다.  
 26.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제14조부터 제20조까지·제47조·제51조 및 제60조에 따른 소음·진동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및 행정처분 등 관리에 관한 사무

**항만공항정책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재정지원) ① 국가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단체 또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로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요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공동차고지 건설
2. 물류정보화 사업
3. 낡은 차량의 대체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과 개선
5. 그 밖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사항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는 운수사업자(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류(유류)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대상·지급방법·신청서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교육세법」 제5조제1항,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 「지방세법」 제196조의17제1항에 따라 경유에 각각 부과되는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주행세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 「교육세법」 제5조제1항, 「석



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석유가스 중 부탄에 각각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교육세·부과금

제55조(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자가용으로 사용되는 화물자동차(이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로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6조(유상운송의 금지)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그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으면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61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게 그 사업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 제24조제4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출입하거나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의 성명, 소속 기관, 출입의 목적 및 일시 등을 적은 서류를 상대방에게 내주거나 관계 장부에 적어야 한다.

## 해양수산물

### □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 (공유수면의 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관리하고, 기타의 공유수면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경제수역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배타적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유수면

**제13조 (방치선박등의 제거)** ①관리청은 전복 침몰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거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방치선박등의 상태, 발견장소, 해당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수질오염의 발생가능성, 공유수면을 관리·이용함에 있어서의 지장 여부 등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③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을 제거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 등에 기재된 자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협력 또는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에게 해당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을 포함한 이의 또는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관리청은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선박의 제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음을 제출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의내용의 타당성 여부(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관리청은 제3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의 통보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청의 이의제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재조사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협약, 「개항질서법」 및 「해상교통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제4호의2 또는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오염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 제7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떠다님으로 인하여 「어촌·어항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어항시설, 「항만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항만시설, 항·포구 안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라.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그 선

박의 잔존가치가 해당선박의 제거에 쓰일 비용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경우  
 ⑦ 관리청이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데 쓰인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담으로 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과, 여성정책과, 아동청소년과, 노인정책과

### □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지도·감독등)** ①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을 운영하는 자에 대한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의 소재지가 동일한 시·도 또는 시·군·구에 있지 아니한 경우 당해 시설의 업무에 관하여는 시설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을 행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의 업무에 대하여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 따로 지방자치단체 간에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에서 정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